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3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개 요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Ⅱ. 검토의견 ····· 2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

Ⅰ.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2.

(3) 회 부 일 : 2026. 5.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Ⅱ. 검토의견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면세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7),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정희용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25),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영환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5), 김승수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30)

□ 위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

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의원안),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또는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되어 2026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입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kℓ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kℓ, 휘발유 187천kℓ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kℓ)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자료: 재정경제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 · 어가 · 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

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1]으로서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심층평가가 진행 중임.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

○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2033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 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